

#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 사 경 위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 11. 27(수) 평창군수(상하수도 사업소장)

나. 회부일자 : 2013. 12. 4(수)

다. 상정일자 : 2012. 12. 4(수) 제19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상하수도 사업소장 천장호)

###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선」 권고에 따른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 환경부 표준급수조례를 반영하여 체납요금 증가산 규정 및 수도요금 정산 규정이 정산 의무자에 대한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삭제 하고자 함.
- 또한, 수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사비용에 동파계량기(계량기 대금 제외)를 포함하도록 하며, 수도요금을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용어정비 등 현행 급수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 부담금의 미납에 따른 세대별 분담금의 납부 규정 삭제(안 제7조제3항)
  - 원인자 부담금 미납에 따른 세대별 분담금 납부 강제 규정을 삭제
- 급수공사 위탁사업지중 급수공사 대행업자 규정 삭제(안 제9조제1항제2호)
  -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동 규정을 삭제
- 동파 계량기의 교체비용에 대하여 수도사업자와 수도사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 계량기의 동파 발생시 교체에 따른 비용 전액을 수도사용자에게만 부담 시키는 것은 불합리함에 따라 계량기 대금은 수도사용자가 공사비용은 수도사업자가 각각 부담하도록 정함
- 수도요금의 정산규정 삭제(안 제19조)
  - 수도요금의 정산 주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체납요금의 부담 문제가 발생하는 등 혼선을 초래하여 동 규정 삭제
-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급수전의 정액요금 미부과(안 제23조제3항)
  - 미사용 급수전에 대한 정액요금 부과 개선
- 체납요금의 증가산금 규정 삭제(안 제29조제2항)
  - 표준급수조례를 반영하여 체납요금 증가산 규정 삭제
-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납부방법 신설(안 제30조의2)
  -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수도이용과 관련된 비용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편의 도모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홍금숙)

-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의 불공정 시비를 개선하기 위한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규정을 삭제하고 동파계량기의 교체비용에 대하여 수도사업자와 수도 사용자의 공동분담, 수도요금의 정산규정 삭제, 체납요금에 대한 증가산금 삭제, 신용카드 등의 납부방법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수도법 개정과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5. 토론요지

《없음》

### 6. 심사결과

《원안의결》

###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건의사항 : 없 음

○ 기타 특별한 사항 : 없 음

**【붙임】**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수도법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를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를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선”을 “수리”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새로이”를 “새로”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지”를 “빈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보조수도계량기를”을 “급수전을 추가로”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노후”를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로, “급수설비”를 “급수시설”로, “공사비용”을 “비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

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제4항(중전의 제3항) 본문 중 “수선비용”을 “수리비용”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아니한 때”를 “않은 경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를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리, 철거 및 파손”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등 필요한”을 “등의”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 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제2항에”를 “제2항에서”로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0조제3항 중 “발부한다”를 “발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군수가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32조제2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설치한 때”를 “설치한 경우”로, “인정한 때”를 “인정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7조제3항제2호 중 “pH”를 “ph”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조례에”를 “조례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승인 없이”를 “승인 없이”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1조 본문 중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5조 중 “이 조례에 정한”을 “이 조례에서 정한”으로 한다.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